

8.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9-303호 1999. 9. 18

개 정 이 유

최근 일부지역의 전세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우려되어 수립한 “중산층 및 서민층주거안정대책(’99. 8. 20. 발표)”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평균규모를 150㎡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소규모(20세대 미만)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이 노후 또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건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10인이상인 경우 주택조합설립을 허용하여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주택건설활성화를 도모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주 요 골 자

- 가. 도시계획구역내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상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평균규모 150㎡이하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, 공동주택의 최대 규모인 297㎡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노후·불량한 소규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10인 이상이면 주택조합설립을 허용하여 소규모 노후·불량주택의 재건축을 촉진하므로서 주택건설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주택회보